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원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42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

발 의 자: 김원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길영,
김영철, 김원중, 김지향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창진, 민병주, 박춘선,
윤기섭, 윤종복, 이상욱,
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
장태용, 최민규, 허 · 훈,
홍국표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국제교류는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에서 나아가 지방정부 · 지방의회 중심의 실무적 교류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. 특히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 관계 형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, 한인(재외동포) 출신 외국 지방의회 의원 등과의 교류는 언어 · 문화적 공감대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정책교류를 촉진할 수 있음.
- 이에 한인 출신 외국 지방의회 의원 등을 초청외교활동의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,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의 교류를 의원외교활동의 중요한 축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.
-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중 초청외교활동의 상대방인 ‘외국인사’의 범위에 한인 출신 외국 지방의회 의원 등을 명시함으로써, 관련 외교 · 교류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 초청 대상에 외국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재직중인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을 추가함(안 제2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재외동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가목 중 “**의한**”을 “**의한 외국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재직중인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**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“초청외교활동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제3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<u>의한</u> 외국인사의 초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·다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----- ----- <u>의한</u> <u>외국 지방의회에서 의원으로 재직중인 한인 지방의회 의원 등</u> 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·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“초청외교활동”에 대한 용어의 뜻 중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교활동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자구수정 등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도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경 명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imkmi080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